

# FTC 업체정보

## 전자결제 관련 새로운 규정 소매업체 비용 절감

**신**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를 받는 업체의 경우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이 업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.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(Dodd Frank Wall Street Reform) 및 소비자보호규정의 일부인 본 규정은 직불카드 거래 관련 거래수수료, 고객이 특정 방법으로 결제할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혜택, 최소 신용카드 구매 가능금액 및 직불카드 거래 체결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규정합니다.

### 새로운 규정

- **직불카드 거래 수수료.** 2011년 10월 1일부로 특정 직불카드의 거래수수료의 한도는 21센트와 거래대금의 0.05%가 됩니다. 발행사가 특정 사기방지규정을 충족하게 될 경우 수수료는 1센트 인상될 수 있습니다. 한도는 \$100억달러 이상의 자산 (관련기관 자산 포함)을 소유한 대형 발행사에만 적용됩니다.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한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[www.federalreserve.gov/paymentsystems/debitfees.htm](http://www.federalreserve.gov/paymentsystems/debitfees.htm)에서 정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.

한도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신용카드 수수료
- 소형발행사 발행 직불카드 수수료
- 정부혜택카드, 특정 재충전 가능한 다용도 선불카드, 선불 점포카드 및 현금발행기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
- 인수사가 상인에게 부과하는 기타 수수료는 상인 할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## 관련 당사자 및 과정

모든 카드 결제는 다음과 같은 당사자가 관여됩니다.

- 제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**카드사용자**
- 카드보유자에게 직불카드를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카드보유자의 계정을 유지하는 **발행사**
- 제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**상인**
- 상인에게 직불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의 계정을 유지하는 **인수사**. 상인 또는 인수사는 특정 처리 서비스와 관련해서 제삼자의 처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정보 경로 및 발행사과 인수사간의 송금 및 수금을 관제하는 **직불카드네트워크 (PCN)**. PCN은 직불카드 네트워크나 신용카드 네트워크, 또는 양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- PCN에서 설정, 부과, 또는 지급받게 되는 수수료를 포함하며 발행사의 전자현금거래에 대한 보상으로 상인 또는 인수사가 지급하는 **거래수수료**

당사자들의 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상인은 금액과 고객카드 정보를 포함한 승인요청을 생성합니다. 승인요청은 다음과 같은 전자경로를 거치게 됩니다.

**상인 → 인수사 (또는 처리회사) → PCN → 발행사**

발행사는 요청정보를 접수하고 카드 계좌가 사용중인지의 여부를 확인, 거래 승인 또는 거절 전자 메시지를 송부합니다.

**발행사 → PCN → 인수사 (또는 처리회사) → 상인**

승인절차는 일반적으로 몇초만에 완료됩니다. 그런 다음 발행사는 고객 계정에 거래금액을 기록하고 인수사는 수수료를 차감한 거래 금액을 상인의 계정에 기록합니다.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“상인할인”으로 지칭되며 거래수수료 및 거래처리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를 포함합니다.

- **고객 할인.** 상인이 모든 고객에게 특정 결제 방법에 대해서 할인혜택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한 할인혜택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공개할 경우 PCN이 이러한 할인혜택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고객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상인이 특정 발행사 또는 특정 PCN이 발행한 카드에 따라서 제공하는 할인혜택 또는 인센티브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**상기 규정이 기존 규정과 어떻게  
다릅니까?** 과거에는 상인이 고객에게 고객이 특정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,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줄 수 없었습니다.

최근의 법무부의 결정은 상인이 고객에게 할인, 혜택 및 카드 비용 관련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비자 (Visa) 및 메스터카드 (MasterCard)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정보는 DOJ 뉴스 [www.justice.gov/atr/public/press\\_releases/2010/262867.htm](http://www.justice.gov/atr/public/press_releases/2010/262867.htm)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.

- **최소 신용카드 구매 금액.** 모든 신용카드와 PCN에 동일한 최소 금액이 적용되고 최소금액이 \$10 이하일 경우 PCN은 상인이 신용카드 사용가능 최소금액을 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.

**상기 규정이 기존 규정과 어떻게  
다릅니까?** PCN이 구매금액이 특정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상인의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경우 PCN 또는 은행에서 최소한의 구매대금에 대해서도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

- **직불카드 관련 네트워크 존재여부 및 직불카드 거래.** 2011년 10월 1일부로 PCN 및 발행사는 상인이 직불카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직불카드 네트워크를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. 상인 (또는 상인의 인수사)은 상인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불카드 결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상인은 가장 낮은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인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. 2012년 4월까지 상인은 대부분의 전자현금거래와 관련하여 최소한 2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불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많은 발행사에서 이미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
**상기 규정이 기존 규정과 어떻게  
다릅니까?** PCN과 발행사는 거래체결과 관련된 상인이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일부 PCN 및 발행사는 직불카드가 단일 직불카드 네트워크 또는 관련 직불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상인이나 인수사가 아닌

PCN 및 발행사에서 특정 카드가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제될 수 있는 경우 거래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정했습니다.

낮은 직불카드 거래수수료 활용방법에 대해서 인수사 또는 처리회사와 상담해 보십시오. 상기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가 월별 전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송장을 함께 검토하고 이러한 수수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해 보십시오. 여러가지 대안을 고려해 보십시오.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.

FTC는 시장에서 부당 행위, 기만 행위,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. FTC 및 기타 정부 기관은 직불카드 거래수수료 및 경로를 포함한 도드-프랭크 법안의 다양한 규정을 집행할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

연방신용조합관리국, 은 연방정부 보험가입 신용조합과 관련된 규정의 집행을 담당합니다. 통화감사국, 은 전국 은행 및 연방 예금은행을 담당합니다.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각주의 회원은행을 담당합니다. 그리고 연방예금보험회사, 는 각 주의 비회원 및 주정부 인가 예금은행을 담당합니다. 연방통상위원회는 상기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상기 규정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금융기관의 규정 집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[paymentcard@ftc.gov](mailto:paymentcard@ftc.gov)로 연락하십시오. 이메일은 보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 기밀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.

New Rules on Electronic Payments Lower Costs for Retailers



September 2011